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기산일 명확화〉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3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기산일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날로 명 확화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2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기산일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날로
명확화

[개정안 조문대비표]

– 2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 ----- -----.
④ ~ ⑱ (생략)	④ ~ ⑱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①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②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며, ③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 기간(수집·운반업 6+6개월, 소각 3+1년, 매립 3+2년, 재활용업 2+1년)내에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④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¹⁾.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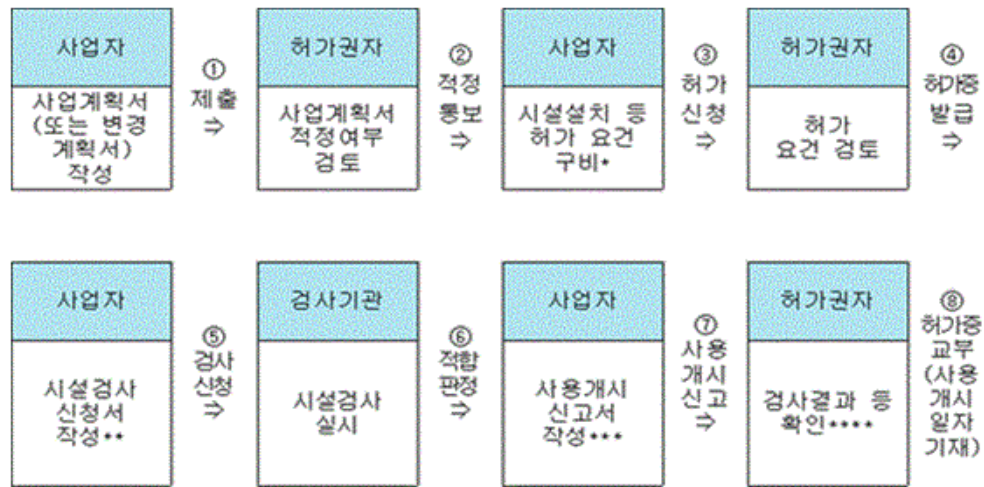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²⁾을 변경하는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나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허용보관량

경우 변경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최초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인지, 변경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대상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대표자·상호 변경 등 행정적인 중요사항 외에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이 30% 이상 변경되는 등 처분시설 설계가 최초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처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초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적합통보일을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시설 공사와 관련되어 허가 신청 기간 기산점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 변경사항이 시설 공사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신청 기간 기산점을 달리 규정³⁾하고 있음.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II.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10-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청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초 적정통보일로부터 허

【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중요 변경사항 별 허가 신청 기간 기산점 】

사업계획 변경사항	시설 공사와 관련	시설 공사와 무관
허가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 적정통보일	최초 적정통보일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다. 영업구역		○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	○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허용보관량	○	

가신청기간을 기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허가 신청 기간 기산점을 원칙적으로는 최초 적합통보일로 하되, 예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8